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table>
<tr><td colspan="2">공공기관 명</td><td colspan="6">통계청</td></tr>
<tr><td colspan="2">평가기관</td><td>㈜케이씨에이</td><td>평가
기간</td><td>2025.04.01.
~
2025.06.27.</td><td>평가
예산</td><td colspan="2">☐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td></tr>
<tr><td rowspan="6">평가대상시스템 개요</td><td>시스템명</td><td colspan="3">인구이동 및 장래인구 추계 시스템</td><td colspan="2">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td><td>2003.01.01 ~
2014.12.31</td></tr>
<tr><td>추진개요
및 목적</td><td colspan="6">○ 대한민국 국민의 지역별 인구이동 규모와 이동의 방향, 이동자 특성 등을 파악하여, 경제와 산업, 주택, 교통, 교육 등 지역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지역별 인구추계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인구를 변동시키는 요인인 국제인구이동의 규모와 흐름, 이동자 특성을 파악하여 현재인구 및 장래인구추계 작성, 국제이동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td></tr>
<tr><td rowspan="4">추진성격</td><td>대상여부</td><td colspan="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50만명 이상 개인정보 연계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제3호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처리</td><td>추진예산</td><td>자체개발</td></tr>
<tr><td>추진주체</td><td colspan="3">통계청</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추진근거</td><td colspan="3">• 통계법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td><td>추진유형</td><td>☐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td></tr>
<tr><td>신기술
유형</td><td colspan="5">해당 없음</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6">☐ 서비스 내용
• 국내/국제인구이동 현황 자료 입수 및 현재 인구 작성
• 전국, 시도, 이민 배경별 장래인구추계
•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 주요 사업내용
• 경제와 산업, 주택, 교통, 교육 등 지역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지역별 인구추계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내부시스템 간의 연계
• 현재인구 및 장래인구추계 작성, 국제이동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내부시스템 간의 연계</td></tr>
<tr><td>운용체계
변경내용
(변경인
경우)</td><td colspan="6">해당 없음</td></tr>
</table>

<table>
<tr><td rowspan="3">개인정보파일개요</td><td>파일명</td><td>정보주체 수</td><td>개인정보 항목</td><td>제3자 제공</td><td>개인정보 처리 목적</td></tr>
<tr><td>전출입 자료</td><td>243,195,718 건</td><td>[필수]
생년월일, 성별
[선택]
-</td><td>-</td><td>국내인구이동통계 작성</td></tr>
<tr><td>출입국 자료</td><td>1,078,568,063건</td><td>[필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통계목적고유번호
[선택]
-</td><td>-</td><td>국제인구이동통계 작성</td></tr>
<tr><td colspan="2">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td><td colspan="4">☐ 전출입자료
1. 인구이동통계 작성을 위해 행안부(읍면동주민센터)로부터 전출입정보중 필요정보(기초정보)를 행정자료중계시스템을 통해 수집하며, 모든 입수자료는 사전에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됨
2. 수집된 기초정보에 대한 데이터표준화를 수행한 후 데이터융복합관리체계시스템으로 자료 이관
3. 데이터융복합관리체계시스템으로부터 인구이동 자료 추출하여 인구이동 및 장래인구추계 DB에 적재
4. 인구이동 및 장래인구추계 DB에 적재된 인구이동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인구, 장래인구추계 등의 집계된 통계자료를 작성
5. 집계 작성된 통계자료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한 후 통계청의 내외부 공개 시스템(KOSIS)으로 자료 이관 및 필요 시 외부 공개
☐ 출입국자료
1. 인구이동통계 작성을 위해 법무부(출입국관리소)로부터 출입국 정보 중 필요정보(기초정보)를 행정자료중계시스템을 통해 수집
2. 수집된 기초정보에 대한 데이터표준화를 수행한 후 데이터융복합관리체계시스템, Govlink로 자료 이관
3. Govlink로 이관된 자료를 국제인구이동통계시스템 내 프로시저를 통해 중복제거하여 인구이동 및 장래인구추계 DB에 적재
4. 인구이동 및 장래인구추계 DB에 적재된 인구이동 자료 중 통계작성대상을 산출하여 국제인구이동통계 작성
5. 집계 작성된 통계자료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한 후 통계청의 내외부 공개 시스템(KOSIS)으로 자료 이관 및 필요 시 외부 공개
☐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 [붙임]</td></tr>
<tr><td rowspan="3">영향평가기준</td><td rowspan="3">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td><td>지표추가</td><td colspan="3">▪ 해당없음</td></tr>
<tr><td>지표삭제</td><td colspan="3">▪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1장)은 "데이터융복합 관리체계시스템"에서 평가함으로써 본 평가에서 제외함.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은 6개 분야(30개 항목)는 평가대상과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함.</td></tr>
<tr><td>지표변경</td><td colspan="3">▪ 해당없음</td></tr>
</table>

	주요 평가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5. 3. 13.)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시행 2025. 3. 13.)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시행 2025. 4. 11.)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시행 2023. 9. 22.)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시행 2025. 4. 11.)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5. 4.)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시행 2024. 10. 31.)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4. 4.) ▪ 개인정보보호 최신 트랜드 반영 : 해당없음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		▪ 개인정보보호법령 준수 여부에 관한 분석 평가: - 인구이동 및 장래인구 추계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및 제34조의2(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모든 개인정보는 비식별화 처리를 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수집하고 있지 않음. ▪ 대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 - 위탁받는 자(수탁자) : ㈜누림소프트 ※ 본 시스템의 인프라(서버, 시스템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관리, 백업 및 복구 관리, 보안관리, 재해복구관리 등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수행함. ▪ "부분이행", "미이행"으로 평가된 사항 관련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위험요소 : - 대상시스템은 인구이동 및 장래인구추계 업무를 위하여 내부시스템 간의 해당 통계자료의 연계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서 홈페이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없으므로, 통계청 대표홈페이지 또는 나라통계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대상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개인정보파일(전출입자료, 출입국자료)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 신규로 보유하거나 변경되는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 등이 미흡할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없음 - 접속기록 5가지 사항 기록, 점검, 보관 및 백업 활동이 미흡할 경우 침해사고 발생 시 책임추적에 어려움이 우려됨 - 개인정보 처리화면 보호조치가 미흡할 경우 비의도적인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증가함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	1.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보호조치 개선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개선 - 개인정보처리방침 보완 - 수탁사 관리•감독 강화 3.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개선 - DB 사용자들의 세션타임아웃 설정 - 관리자 등 특수권한 로그인 시 알림기능 적용 - 접속기록 관리강화

		- 접속기록 점검 강화 - 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 강화 - 개인정보 처리화면 보호조치 강화
	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	▪ 대상시스템은 인구이동 및 장래인구추계 업무를 위하여 내부시스템 간의 해당 통계자료의 연계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서 취급하는 모든 통계정보는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된 정보이며, 비식별화 조치 이전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5조의3(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및 동법 제34조의2(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된 정보임. ▪ 대상시스템의 내부시스템 간의 해당 통계자료의 연계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접근권한 통제, 접속기록 관리 등을 양호하게 수행하고 있음. 발견된 위험요소들은 관리상 약간 미흡한 사항들로서 정보주체들이 특별히 우려할 중대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음.
평가결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역별 평가 결과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개인정보파일 관리 분야는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개인정보처리방침 분야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영역은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중 이용·제공, 위탁, 파기 분야는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수집, 보유 분야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영역은 접근통제,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물리적 접근방지,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 분야는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분야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붙임]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

